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믿을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신뢰사회의 기본입니다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Contents



- 2 공공부문 주요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 3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 및 오남용 사례



Contents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 1.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요
-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1.3. 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고려사항

1.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요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방향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Overview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을 통한 산업 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신설
-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 정비 (동일 행위 동일 규범 적용)

- 분쟁조정 제도 개선,
 사적목적 이용금지 등 보호체계 개선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인공지능(AI) 기술 가속화로
 인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신설

- 국외이전 요건의 다양화
- 이전 중지명령권 신설을 통한 안전조치 강화
- 형벌 중심의 제재에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을 통한 보호·예방의 실효성 확보

1.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경과

'20년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추진경과



데이터 3법 시행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출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계획 수립 및 전문가 의견 수렴

4차위 해커톤, 입법예고, 산업계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 '21년 9월 개정안 국회 제출
- '23년 2월 국회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가결
- '23년 3월 국무회의 의결

개정법 공포, 2023년 9월 개정법 시행 예정(개인정보전송요구권등 일부규정에 대한시행일 예외)

1.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요약

No	개정사항		유관조항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2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3		공공기관의 보호활동 강화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4		업무 재위탁 관리 규정 정비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5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취급자의 관리감독 강화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59조(금지행위)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위 기준 강화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7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8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제2조(정의),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9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정보주체 권리 신설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10		만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신설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사항 추가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1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12	온·오프라인 규제의 일원화		제39조의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통합또는 삭제	
13	가명정보 처리 제도 개선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14	분쟁조정 제도 강화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제47조(분쟁의 조정).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15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6	과징금 제도 정비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1/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로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신설
-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가 대량 수집·유통되고 있으나, 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자기주도적으로 유통·활용하는데 한계
-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전송요구권(이동권) 근거를 마련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분야별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정보주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① 본인에 관한 정보에 한 해,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권리 신설
-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① 정보주체 본인,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할 의무 부담
 - ✓ 전송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중단의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추후 시행령에서 명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민원처리법 제10조의2, 공공데이터법 제17조 등 각 조항에 대한 업무요구사항의 이해 필요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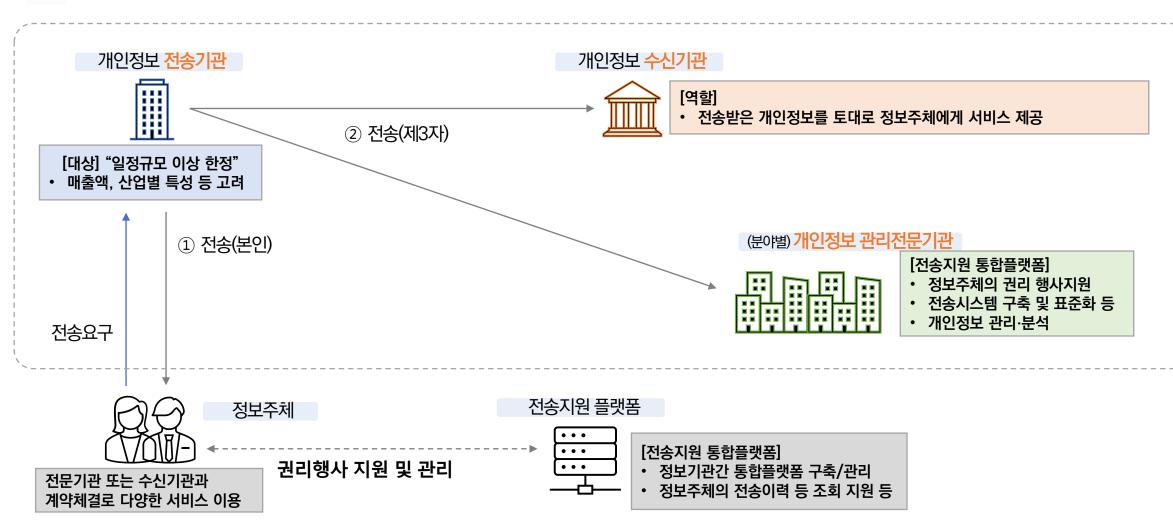
😈 [참고자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타 법률 현황(공공기관 유관)

법 조항	법 조항 주요 내용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 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민원처리법 제10조의2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민원처리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00000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 [참고자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기본 개념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 [참고자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이해관계자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정보주체	■ 정보주체인 국민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① <mark>본인,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mark> 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	
보유기관 (개인정보처리자)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① 정보주체 본인,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해야 할 의무 부담 ※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 	
수신기관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를 전송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동의를 통해 정보주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 <mark>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mark> 충족하는 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정부의 지정을 받아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등의 업무 수행	
전송정보	■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를 포괄하되, 동의 또는 계약에 따라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함 ※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 제외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참고자료] 산업분야별 마이데이터 추진현황

공공 분야

전자정부법 개정('21년 6월) 및 민원처리법 개정('20년 10월)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전송요구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전체로 확대해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 요구 가능
- (민원처리법)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조항 정비
- (공공데이터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공데이터 공개 독려

금융 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및 허가제 운영

- (마이데이터 사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업무
- (23년 5월 기준) 마이데이터 본허가 취득사업자 64개 사업자 지정. (23년 5월 기준) 누적이용자 8.025만명(중복가입자 포함)

의료 분야

의료 분야 : 의료법 개정('20년 3월)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법안 마련(발의 : 22년 10월)을 통한 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검토 중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 [참고자료]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비교

구분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의2)	신용정보법(제33조의2)	
(요구) 주체	■ 정보주체	■ 개인 신용정보주체	
대상정보 요건	 ■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도 포함) ②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그 체결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③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or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or 법령에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기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 가능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②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한 정보 ③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간의 권리・의무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상대방	■ 시행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등 구체적인 전송요구권의 행사의 상대방은 시행령에서 규정	
본인/제3자에게의 전송 요구권 구분 규정 여부	■ 7분	■ 미구분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정보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개인신용평가회사 기타 이와 유사한자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전송방법	■ 시행령 위임	상대방, 대상정보, 제공받는 자, 정기적 전송요구 여부 및 그 주기 등 특정 필요 전자문서 기타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표준 API 활용	
기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규정 전송요구 철회권 명시 다운로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전송요구로 타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 침해불가 명시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전송기관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관리감독 의무 명시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규정 ■ 전송요구철회권 명시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2/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업무의 규정
- 개인정보 전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정요건의 규정과 개인정보 관리전문기관의 금지행위 규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주요 개정 내용

개정

통합 및 삭제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는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행사지원,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으로 개인정보 전송관리분석에 필요한 기술수준 및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허가제)
 - ✓ 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명시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의 설립 지정에 대한 모니터링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3/3)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업무의 규정
- 개인정보 전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정요건의 규정과 개인정보 관리전문기관의 금지행위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주요 개정 내용

신설

통합 및 삭제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목록, ②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철회 내역, ③ 개인정보의 전송 이력 관리 등 지원 기능. 그 밖에 대통령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
 - ✓ 구축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명시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의 설립 지정에 대한 모니터링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1/3)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복잡하고 경직적인 동의제도 운용으로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합리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활용에 제약
- 정보주체 또한 복잡한 고지사항과 절차 등으로 '동의의 형식화' 및 '동의 만능주의" 해소
- 시행령을 통해 동의받는 방법에 대한 글로벌 기준 반영

주요 개정 내용

통합 및 삭제 개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기업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활성화(단,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증책임의 강화) 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동의제도 개선
 - ① 필수 동의 강제 관행 개선
 - ② 코로나 19 상황 안전조치 강화
 - ③ 국민 생명보호 관련 개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입증책임에 대비한 법률 또는 법령에 의한 근거 조항 정비와 그로 인한 동의 불필요 사항의 분류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2/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처리근거 완화에 따른 변화 가능성

- 형식적으로 사전적인 필수 동의에 대한 과도한 동의 획득 절차 완화
- 제17조 제1항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정보주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보주체 동의에 기반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활성화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과 연계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촉진 기대
- 사전 동의 및 구분 동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재고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3/3)

개인정보 처리 요건 정비

구분	주요 개정 사항
필수 동의 강제 관행 개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필수 동의(제39조의3) 규정을 삭제하고,일반규정 (제15조)으로 통합 ■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경우 요건을 정비('불가피하게' 삭제)하고, 동의 없는 수집·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코로나 19 상황 안전조치 강화	■ 개인정보 처리요건에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집·이용 요건을 추가하여, 코로나19 등 공중위생 목적인 경우에도 안전조치,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1호, 제3호 삭제 후 수집 이용 요건에 추가
국민 생명보호 관련 개선	■ 개인정보 처리요건 중 긴급상황 요건에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의 생명 등 보호를 위해 급박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

분리동의 대상(법 제22조(동의받는 방법)

- 동의 받는 방법 규정 정비: 구분하여 각각 동의받아야 하는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열거
- 법적 근거에 따른 개인정보의 구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동의받은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동의 획득 시 구분하여 동의받아야 하는 경우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 ✓ (목적 내) 제3자 제공 시 또는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시
 -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 제공 시
 -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시
 - ✓ 홍보 마케팅 시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



😈 [참고자료]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 관련 시행령 개정

법 시행령 제17조(동의받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적법한 동의의 조건 신설

- ① 법에 따른 정보주체(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 2. 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 3.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
-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참고) GDPR에서의 동의 조건

- 1. 처리가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컨트롤러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2. 정보주체의 동의가 기타의 사안과도 관련된 서면의 진술서로 제공되는 경우, 동의 요청은 그 기타의 사안과 분명히 구별되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고 입수가 용이한 형태로, 명확하고 평이한 문구를 사용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진술서의 어느 부분이라도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3.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동의의 철회는 철회 이전에 동의를 기반으로 한 처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보주체는 동의를 제공하기 전에 이 사실에 대해 고지 받아야 한다. 동의의 철회는 동의의 제공만큼 용이해야 한다.
- 4. 동의가 자유롭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무엇보다 서비스 제공 등의 계약의 이행이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완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과징금 처분 사례

문제제기

- 프랑스의 프라이버시 옹호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이하 LQDN)이 '18년 Amazon이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룩셈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법 위반 제소
- LQDN에 따르면, 아마존이 고객에게 어떤 광고와 정보를 수신할지 선택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Amazon이 맞춤형 광고 서비스 등 상업적 광고 목적에 고객 동의를 얻지 않고 활용했다고 주장
- GDPR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개인정보 주체와의 계약 ▲컨트롤러나 제3자의 법률적 이해관계 관련 조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Amazon은 이 중 최소 하나 이상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

위반 지점	행정처분 근거
동의	 LQDN은 일반적인 소비자 프로파일 뿐 아니라 웹상에서 다양한 사용자 행동추적을 통해 맞춤형 광고가 더욱 정교하게 자동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 ✓ 그러나 Amazon이 공개한 어떤 문서에서도 사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사용자 행동 분석과 맞춤형 광고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 Amazon이 동사의 개인정보 약관을 토대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고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고 추정하며,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GDPR의 관련 규정 준수 필요 주장
계약	■ Amazon의 추천 기능이나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Amazon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과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계약 범위를 넘어선 활동 ✓ Amazon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23조에 따르면, "Amazon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에게 제3자 광고를 포함한 기능, 제품 및 서비스를 추천하며 이용자의 선호를 식별하고 이용자 경험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마련할 것"으로 언급 ✓ 그러나 Amazon 서비스 계약은 재화의 구매와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 행동 프로파일 분석이나 이를 토대로 한 맞춤형 광고는 서비스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활동으로 인식 ✓ 이는 GDPR 제6조와 제7조 등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처리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와 계약 의 실행 목적 간에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정당한 이익	■ 이용자 행동 분석과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는 GDPR 제6조 제1항제(f)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그러나 Amazon이 공개한 어떤 문서에서도 사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사용자 행동 분석과 맞춤형 광고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합법적 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목적을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이 어야 함 ✓ 그러나 Amazon의 이용자 행동 분석과 맞춤형 광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GDPR 전문 제47항9)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당한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로 갈음하기에 미흡

(출처: KISA GDPR 대응센터, 룩셈부르크 감독기구의 아마존 역대최대 과징금 부과사례(*21년 7월)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강화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2항에 근거하던 공공기관 관리수준에 대한 법적 근거의 명확화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법 제11조의2(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 조항 신설
- 평가 기준과 방법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와 권고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 등 보다 강화된 개선요구 근거 마련
 - ✓ 평가의 기준 · 방법 · 절차 및 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임



공공부문 주요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대책과 연계하여 향후 개인정보 수준진단 제도의 강화 예상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 대상 개정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조항에 대한 불분명함이 존재함
- 개인정보파일로 등록되지 않은 보호대상에 대한 관리 소홀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개인정보파일 예외 대상 중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을 삭제하고. "1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
-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공개에 대해 "의무적 공개(~하여야 한다)"에서 "권고(~할 수 있다)"로 개정
 - ✓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행령으로 구체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대상 확대(내부 임직원의 개인정보)와 추가적인 보호 활동의 범위 강화가 예상됨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 ☞ [참고자료] 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 대상 개정 관련 시행령 개정
- 법 시행령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 대상

- 1. 회의참석 수당지급, 자료 · 물품 · 금전의 정산 · 송부 또는 자문기구 운영 등 일회적 행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 2.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 3. 그 밖에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 업무위탁과 재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의 규정 명확화(1/2)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발생 시 재위탁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수탁자와 재위탁자에 범위와 법적 적용사항이 불명확함
- 재위탁 사항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강화 필요

주요 개정 내용

통합 및 삭제 신설 개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위탁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수탁자 뿐만 아니라. 재위탁 받은 수탁자까지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에 공개
- 수탁자의 범위를 재위탁받은 수탁자까지 포함하고 수탁사의 법 준용 범위를 확대 규정함(해당 법 조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 수탁자"로 명확히 규정)
- 수탁자가 재위탁시 위탁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규정
 - 수탁사가 준용해야 할 법 조항 : 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의2, 제25조의2,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의2,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개인정보처리위탁 대상의 확대, 수탁사의 법적 준수요건의 확대, 위탁사의 수탁사 관리감독 요구 강화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 ₩ 업무위탁과 재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의 규정 명확화(2/2)
-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항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및 제6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의 사적 목적 이용 금지 및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감독 강화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사적이용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 곤란
- 개인정보의 불법 사적 이용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수사 및 형상처벌 대상이나 기존 법에는 명확한 처벌 근거 부족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59조(금지행위),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제59조제3호 금지행위 규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추가 ㄴ (개정)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제28조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지정 시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개정



공공부문 주요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대책과 연계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범위 정비 및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보호를 위한 활동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기반 강화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 규정 신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운영 신설,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예외조건과 자격요건이 시행령을 통해 명시 예정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명시



조직 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확인 및 협의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검토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강화 및 사전 실태점검 강화

개정 취지 및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자료제출요구권과 사전 보호활동 권한 강화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보호위원회의 보호 활동 권한 강화

✓ 자료제출 요구, 검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명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예방 차원의 활동에 관한 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참고자료]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강화 및 사전 실태점검 강화 관련 시행령 개정

혀행 개정안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 · 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 · 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경우를 말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 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삭제〉 에게 검사 대상 및 사유를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호위 원회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 일정, 검사 범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 고. 검사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사 기간은 보호위원회와 혐의하여 30일 이내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받거 나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 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중요 법적 안내사항임
- 개인정보처리방침 상 고지내용 추가와 적절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평가와 개선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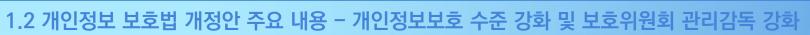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법 제30조의2을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평가 및 개선 권고 규정(평가 기준 : 법적 요구사항 반영 여부,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공개 방법의 적절성으로 구성)

✓ 보다 자세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UI, UX 변경 방안 마련하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와의 업무 연계 필요







[참고자료]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관련 시행령 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자 선정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및 형태 · 방식
-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행위 발생 여부
- 아동 · 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기준

- 개인정보 처리 근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법에서 내용의 적정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 이해의 용이성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쉽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특히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 접근성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특례 신설

시행령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민간 수범자의 경우) 일반규정(종전 영 제30조)과 특례규정(종전 영 제48의2)으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규정 통합
- (공공기관)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별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관련 특례 조항 신설
- 안전조치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의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기술중립성 원칙을 반영

시행령 주요 내용

신설

통합 및 삭제 개정

시행령 제30조의2(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특례)

-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조치 요구사항(내부관리계획, 접근권한, 접속기록) 신설
- 공공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접근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거나 전담인력 배치
- 공공시스템 각각에 대하여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된 공공시스템 협의회를 설치 · 운영



안전성 확보조치,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고시 개정안 검토,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기관 내 적용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조항 개정 및 신설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 증가
-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 다가오는 모빌리티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이동형 기기 운영 기준 및 법적 근거 마련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예외 규정의 추가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 Opt-In의 기조
 - >>>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 촬영된 정보주체는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 사후 대응 관점으로 개정안을 마련함
- 이를 위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표시방법(불빛, 소리, 안내판) 등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을 경우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능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의 업무 목적 상 사용하는 바디캠 등에 대해 업무 활용 시 운영 기준 마련 및 적용 필요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 [참고자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조항 개정 및 신설 관련 시행령 개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예외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의 예외)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 · 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방법

-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해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다만,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의 예외

- 출입자 수 등 통계값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 값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 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1/2)

※ 자동화된 결정이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의미하는 것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분야(인사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가 급증하는 가운데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가 증가하고 있음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의 적용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근거 마련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대한 관한 사항 명시
-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에 대한 확인 절차가 명확하게 설명 및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
 - ✓ 공개 방식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명시



공공기관 업무 중 자동화된 결정(AI 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의 존재 여부와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 절차 마련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2/2)

자동화된 결정 관련 입법 사례 비교

구분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의 2)	신용정보법(제36조의2)	EU GDPR(제22조)
권리 내용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을 요구할 권리 	 자동화된 평가 여부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유리한 정보의 제출 기초정보 정정, 삭제 및 평가결과 재산출 요구 	■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권리 예외	 ■ 거부권 예외(설명요구 가능) ① 정보주체의 동의 ② 법률상 특별한 규정 ③ 계약체결 및 이행 	 요구에 대한 거절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 ② 상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 	 ■ 적용받지 않을 권리 예외 ① 정보주체의 동의 ② EU 또는 회원국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③ 계약 체결 및 이행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 거부, 설명 등 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 배제,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설명 등 필요한 조치 의무 부여	_	■ ①, ③의 경우 인적 개입 요구, 본인의 관점 피력, 이의제기 권리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의무 부여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만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보장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 조항이 부재한 반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필요성 대두됨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와 확인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신설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 조항 신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획득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규정함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지 시에는 아동이 해당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규정



정부 정책적용 대상이 만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와 고지사항의 적절성 등에 대해 재검토 필요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선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중요 법적 안내사항
- 법 개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관한 가명정보의 처리, 결합제한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 상 고지내용 추가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처리 시 법 제30조 3의3을 통해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를 선택하도록 규정(해당 시)
- 법 제28조의2. 제28조의3의 가명정보의 처리와 결합제한에 관한 사항을 처리방침에 고지하도록 규정(해당 시)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와 연계하여 처리방침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필요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개정 취지 및 필요성

동일 행위 동일 규범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제공 내역 대상의 확대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 · 제공 내역의 통지)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통지'로 개정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통지 의무 적용 이해관계자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통지대상을 이용자에서 정보주체로 확대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를 이용·제공 내역 통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용·제공 내역 예외 조건을 신설함



이용·제공 내역 통지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여부 확인 필요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이용제공 내역 통지 시행령

▶ 시행령 제15조의3(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 내역의 통지) 개정안

구분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이용제공 내역 통지 적용 대상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여 저장 ·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하며, 저장 ·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으로 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통지 예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집 출처 등 통지를 통해 개인정보 이용 · 제공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 3.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업무수행을 위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인 경우 4.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경우
통지 방법 및 주기	③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ㆍ알림창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온·오프라인 규제의 일원화



▼ 온·오프라인 규제의 일원화(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 정비)(1/2)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데이터 3법 개정 시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특례규정(제6장)으로 단순 이전·병합
- 온·오프라인 서비스 경계가 모호함에도 불구, 오프라인 규제(일반규정)와 온라인 규제(특례규정)의 이원화로 기업의 법 적용 혼선 및 이중부담 발생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등

-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을 일반규정과 일원화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규범 적용
 - ① (중복 규정 통합) 일반규정과 유사·중복되는 특례규정은 일반규정으로 통합·정비하여 온-오프라인 사업자 간 상이한 규정 단일화
 - (특례적용 확대) 특례에만 있는 손해배상 보장, 국내대리인 지정, 이용내역 통지 등은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확대 적용
 - (불필요한 특례 삭제) 유효기간(1년) 경과 시 파기 또는 별도 보관 의무 삭제. 방송사업자 준용 규정 등 불필요한 특례규정 삭제



일원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된 조항의 검토 및 반영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온·오프라인 규제의 일원화





특례규정 개정 현황과 공공기관 검토사항

특례 규정	개정내용	공공기관 담당자 추가 검토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제39조의3 ①②③)	제15조 · 제16조 일반규정에 통합	-
만14세 미만 아동 정보 수집(제39조의3 ④⑤⑥)	제22조의2 · 제5조제3항 신설하여 적용 확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추가 적용 검토
유출 통지·신고제도(제39조의4)	제34조 일반규정에 통합	-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제39조의5)	제28조 일반규정에 통합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추가 검토
유효기간제(제39조의6)	삭제 (이용자와 기업의 불편 해소)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의 개정여부 확인
동의철회권 규정(제39조의7)	제37조 일반규정에 통합	-
이용내역 통지제(제39조의8)	제20조의2 신설하여 적용 확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추가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39조의9)	제39조의3 신설하여 적용 확대 ·	-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제39조의10)	제34조의2 신설하여 적용 확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추가 적용 검토
국내대리인 지정(제39조의11)	제31조의2 신설하여 적용 확대	_
국외이전·상호주의(제39조의12·13)	제28조의8~제28조의11까지 신설하여 적용 확대	-
방송사업자등 특례(제39조의14)	삭제(방송사업자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포섭 가능)	-
과징금 특례(제39조의15)	제64조의2 신설하여 적용 확대	-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가명정보 처리 개선





가명정보 처리 제도 개선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가명정보의 보유기간 미지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 존재
-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조항 개선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가명정보도 파기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처리 시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가명정보의 파기 기간에 대한 사항 파기와 파기 기록의 보관요구사항을 명확히 규정



가명정보 처리 시 목적에 따른 적절한 보유기간을 산정하고 보유기간 도래 시 파기 기록의 관리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분쟁조정 제도 강화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강화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개인정보 권리침해 시, 소송에 앞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침해중지, 손해배상 등)하는 분쟁조정제도 운영
- 조정신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한하며, 분쟁조정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이 없어 적극적 조정에 한계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제47조(분쟁의 조정),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 분쟁조정 요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 분쟁조정 관련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출입 및 자료조사 등 사실조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
-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거부'로 간주하던 것에서 '수락'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기준 전환
-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는 권한 신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자료요청권, 개선의견 통보 등)의 지속적인 강화 예정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국외 이전





☞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 정비

개정 취지 및 필요성

국경 없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필요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11(준용규정)

- 해외 법제와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동의 이외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중지명령권을 신설하여 보호조치 강화
- (요건 다양화) 국외이전 요건을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화
- **(중지 명령권 신설)** 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이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아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 신설

국외이전 요건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② 법률 또는 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③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을 위하여 법정고지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⑤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 호수준과 동등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과징금 규정 정비





☑ 과징금 규정 정비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경미한 위반사항까지도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업무담당자의 과중한 부담 및 업무회피 초래
-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어 글로벌 입법 추세에 맞춘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개정

통합 및 삭제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 과징금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에서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변경
- 다만, 과징금 산정 시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효과성이 확보되도록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기존)
가명정보 처리(제28조의6)	전제 매출액 3% 이하
가당성도 저디(제26소의0)	매출액 없는 경우 4억원 or 자본금 3% 중 큰 금액 이하
주민번호 유출(제34조의2)	5억원 이하
마버 트레/레20조이1트)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 이하
망법 특례(제39조의15) 	매출액 없거나 산정 곤란 시 4억원 이하



개정

- 과징금 규정 통합정비(제64조의2 신설)
- 상한액 '전체 매출액 3% 이하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없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명시 (제60조의2 제2항 1호, 3호)

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과징금 규정 정비



☞ [참고자료]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

▶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 중대성	부과 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5% 이상 2.1% 미만
보통 위반행위	0.9% 이상 1.5% 미만
약한 위반행위	0.03% 이상 0.9% 미만

▶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 중대성	부과 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7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3 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고려사항





😈 '20년과 '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공공기관

구분	의무가 강화된 주요 조항	의무가 완화된 주요 조항
2020년 법 개정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의 법적근거,목적 및 범위 등 공개의무 (제18조 제4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강화 (제25조 제8항)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제32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의무(제33조) 개인정보열람 요구권 행사 편의를 위한 별도의 단일창구 마련(제35조 제1항)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응할 의무(제43조 제3항)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사유 확대 (제15조 제1항 제3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 제공 사유의 확대(제18조 제2항 단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공개 의무 완화(제30조제1항)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제한·거절 사유 확대(제35조 제4항 제3호)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 제한(제37조 제1항 단서) 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권 거절 사유 확대(제37조 제2항)
2023년 법 개정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로 데이터 전송 확대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정보주체 권리신설, 아동의 권리 신설)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보호 수준평가 강화,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대상 확대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및 관리 강화(처리방침 평가 및 개선 제도 신설) 업무위탁에 따른 처리제한 공개 및 관리 강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신설 및 강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로 인한 업무 확대(이용내역 통지,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등) 보호위원회 권한 강화로 인한 자료제출 및 사전실태점검 사례 증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처리 규제 완화





참고자료

[개정안 및 보도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개정안 보도자료, 2023년, 3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웨비나 동영상 자료]

- [G-PRIVACY 2023 웨비나] 이병남 개인정보위 과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데일리시큐, 2023년 4월
- [법무법인 광장 웨비나]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고환경 변호사, 채성희 변호사, 손경민 변호사 등, 2023년 3월

[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 주요 내용 살펴보기, 손도일, 안다연, 허승진(법무법인 율촌), 2023년, 3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법무법인 세종, 2023년 3월(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039)